



Department of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030

통지 번호	CP504
과세 연도	2005
통지 일자	2009 년 3 월 2 일
사회복지 보장 번호 (SSN)	999-99-9999
연락처	전화번호 1-800-829-0922
귀하의 발신자 ID	1234
페이지 1 / 4	

01899954671
JAMES & KAREN Q.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 CT 00000-7253

강제징수 통지서

귀하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압류 예정 즉시 납부해야 할 금액: \$3,999.86

이전에 통지한 바와 같이, 국세청 기록에 따르면 귀하는 2005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되는 과세 기간에 대한 세금을 미납하였습니다 (Form 1040). 귀하가 즉시 전화를 하지 않거나 2009 년 3 월 12 일까지 미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가 주에서 환급 받게 될 일체의 세액을 압류(강제징수)하여 미납 세금 \$3,999.86 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주 환급 세액을 압류한 후에도 미납 잔액이 있을 경우, 귀하의 다른 재산 또는 재산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청구내용 요약

미납 세액	\$2902.68
미납 과태료	284.26
이자 부과액	812.92
즉시 납부해야 할 금액	\$3,999.86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

즉시 납부

- 세금 \$3,999.86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9년 3월 12일 이후에 귀하가 주에서 환급 받을 세액이 압류(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뒷 면에 계속...



James & Karen Q.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 CT 00000-7253

통지 번호	CP504
통지 일자	2009 년 3 월 2 일
사회복지 보장 번호	999-99-9999

납부

- 수표나 환의 수취인은 United States Treasury로 하십시오.
- 지급 수단과 서신에는 사회복지 보장 번호 (XXX-XX-XXXX), 과세 연도 (2005) 및 양식 번호(1040)를 기입하십시오.

즉시 납부해야 할 금액

\$3,999.86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030
01899954671

0000 00000000 0000000000 00000000 0000

통지 번호	CP504
과세 연도	2005
통지 일자	2009년 3월 2일
사회복지 보장 번호 (SSN)	999-99-9999
페이지 2 / 4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 계속

즉시 납부 - 계속

- 현재 미납액 전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지금 가능한 금액만큼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추후 분할상환 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www.irs.gov를 방문하여 키워드 "tax payment options"를 검색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분할납부 및 납부 동의 -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귀하가 자격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 귀하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인출
 - 급여에서 공제
 - 신용카드 납부
- 또는 1-800-829-0922 번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선택을 상의하십시오.

귀하께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귀하가 이미 미납 잔액을 완납하였거나 납부액이 귀하의 계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1-800-829-0922번으로 전화하시고, 귀하의 납부정보를 준비하여 담당자와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저희에게 우편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부분에 내용을 기입하고 잘라내어 이 잘라낸 부분을 서신이나 납입증빙자료를 포함하는 문서와 함께 저희에게 송부하여 주십시오.



James & Karen Q.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 CT 00000-7253

통지 번호	CP504
통지 일자	2009년 3월 2일
사회복지 보장 번호	999-99-9999

연락처 정보

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1-800-829-0922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irs.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 귀하가 서신을 동봉하는 경우 여기를 체크하십시오. 모든 서신에는 사회복지 보장 번호 (XXX-XXX-XXXX), 과세 연도 (2005) 및 양식 번호 (1040)를 기입하십시오.

☐ 오전
☐ 오후

☐ 오전
☐ 오후

기본 전화번호 통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 보조 전화번호 통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

통지번호	CP504
과세 연도	2005
통지 일자	2009 년 3 월 2 일
사회복지 보장 번호 (SSN)	999-99-9999
페이지 3 / 4	

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

- 미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2009 년 3 월 12 일 또는 그 이후에 귀하가 주에서 환급 받을 세액을 압류(“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국세법 제 6331 항 (d)호의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 통지서입니다.
- 주 환급 세액을 압류(강제징수)한 후에도 여전히 미납 잔액이 있을 경우, 귀하에게 IRS 청원 심사실(Office of Appeals)에서 청문할 권리를 부여하는 통지서를 귀하에게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그 후에 귀하의 다른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한 압류(“강제징수”) 또는 차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부동산 수수료, 기타 소득
 - 은행 계좌
 - 사업 자산
 - 개인 자산 (차량 및 주택 포함)
 - 사회복지 보장 수급액
-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납부 요청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언제든지 귀하의 재산에 연방세 유치권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 유치권이 설정되면 귀하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 유치권은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도 표시되므로—귀하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IRS 가 귀하의 재산에 대한 우선 압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귀하의 채권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통지됩니다.
- 귀하가 세무 부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귀하의 재산에 대한 압류(“강제징수”)권을 갖습니다.

과태료

미납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

금액

미납 과태료

\$284.26

납기 후에 세금을 납부하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월 0.5%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최대 금액은 미납금액의 25%입니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는 매월 과태료가 미납액의 1.0%로 인상됩니다. 1개월이 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내국세법제6651항)

과태료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1-800-829-0922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과태료의 면제 또는 삭감

국세청은—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사망, 자연재해로 인한 재무 기록의 손실 등의—상황으로 인하여 적시에 납세자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귀하의 과태료 부과액을 면제 또는 삭감해 주도록 고려해 주기를 바라시면 아래 조치를 취하십시오:

- 재고할 과태료 부과액의 종류를 명시 하십시오 (예: 2005 년도 지연 신고 과태료).
- 각 과태료 부과액에 대하여 재고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귀하의 진술서에 서명하고 저희에게 우송하십시오.

저희가 귀하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후, 귀하의 설명 내용이 과태료를 삭감 또는 면제할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통지번호	CP504
과세 연도	2005
통지 일자	2009 년 3 월 2 일
사회복지 보장 번호 (SSN)	999-99-9999
페이지 4 / 4	

IRS 의 잘못된 서면 조언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

IRS 의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다음 기준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귀하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IRS 에 서면 조언을 요청했는지 여부
- 귀하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IRS 에 제공하였음
- 귀하가 IRS 로부터 서면 조언을 받았음
- 귀하가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그 조언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IRS 의 잘못된 서면 조언 때문에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를 요구하려면 '환급 청구 및 경감 요구서' (Form 843)를 작성하여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IRS 서비스 센터로 제출하십시오. 이 양식을 원하거나 귀하의 해당 IRS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면 www.irs.gov 를 이용하거나 1-800-829-092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자 부과액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부터 세액 완납일까지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해당되는 과태료를 포함하여 미납금액이 있는 한 부과됩니다. (내국세법 제 6601 항)

항목	금액
총 이자	\$812.92
아래 표는 귀하의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계산에 사용된 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자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1-800-829-0922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기간	이자율
2005.10.1 ~ 2006.6.30	7%
2006.7.1 ~ 2007.12.31	8%
2008.1.1 ~ 2008.3.31	7%
2008.4.1 ~ 2008.6.30	6%
2008. 7. 1 ~ 2008. 9.30	5%
2008. 10. 1 ~ 2008. 12.31	6%
2009. 1. 1 일 이후	5%

추가 정보

- 참고 사이트: www.irs.gov/cp504.
- 세무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irs.gov 를 방문하거나 1-800-TAX-FORM(1-800-829-3676)으로 전화하십시오.
- 동봉한 IRS 강제징수 절차 (간행물 594)를 검토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저희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상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납세자 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업원, 고용주, 은행 또는 이웃 사람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계좌와 관련하여 저희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통지서는 귀하의 기록 서류로 보관하십시오.

국세청은 본 통지서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각 통지서에는 귀하의 공동 계좌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미납액은 한 번만 납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